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

■ 이철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37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주문 및 제안이유	1
1. 주문	1
2. 제안이유	3
III . 검토의견	5
1. 제안취지	5
2. 주요 검토의견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철규의원 등 7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하던 사북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후 노·사·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

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정치·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해 왔다.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 등 지원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사북사건 45주년을 맞아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사북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 당시 노조 지부장 가족, 경찰 측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던 광부와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음.

예정된 집회가 불허되자 광부들은 이에 항의하였고, 이 광경을 촬영하던 사북 경찰이 도주하면서 광부를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지서 등 주요건물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단의 광부들에 의해 노조 지부장의 부인이 기둥에 묶여 집단폭행 당하고, 진압과정에서 대처하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하였음.

이후 노·사·정 대표가 11개 항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계엄사령부가 ‘사북 사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200

여 명의 광부와 부녀자 등 주민들을 불법 체포·구금·고문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

정치·이념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시작되었던 사북 사건은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피해자로 남겨둔 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음.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사북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

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시 결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을 재차 권고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령화로 상당수가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의 사과를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이에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

Ⅲ. 검토의견

1. 제안 취지

사북사건은 1980년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소재 사북광업소에서 광부와 주민들의 노동쟁의 중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후 관련자들이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구금되고, 고문·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는 사북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사북사건에 관한 국가사과 등의 권고를 하였음. 1기 진실화해위원회(2008년)에서는 국가는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며, 사북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위법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¹⁾하였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3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보고서 및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생략)

< 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복사건 권고사항 >

- ❑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국가는 사복사건 이후 연행·구금되었던 사건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김00와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관련자들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복 사건 당시 계엄당국은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사복사건의 교훈을 통해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사회집단들의 이해충돌과정이 민주적이며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2024년)는 사복사건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조사에서 밝혀진 인권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사복사건 권고사항 >

- ❑ 국가는 합동수사단이 사복사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한 점, 구타 및 고문,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국가는 사복사건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북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 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의안은 사북 사건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광부들과 주민뿐만 아니라, 노조위원장 가족과 진압에 나섰던 경찰관 등 모두를 사북 사건의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생존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 주요 검토의견

가. 국가차원의 사과와 위로 촉구(안 주문 제1호)

결의안 주문 제1호는 사북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 당시 노조 지부장 가족, 경찰 측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있음.

앞서 살핀 대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국가에 대해 사과를 권고하였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4조²⁾는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방부는 국가사과 이행을 위해서는 사과의 주체 및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국방부·정선지역사회연구소 면담을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4조(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① 제43조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이하 “소관 국가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소관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한다.

③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소관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계획,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의 제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최(2025. 10. 17.)³⁾ 하여 국가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2025. 11. 21.)에 국무총리 영상⁴⁾을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나.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안 주문 제2호)

결의안 주문 제2호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 권고사항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화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이에 대해 국방부는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예와 같이 입법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3) 국무총리실 1차관 주재

4) 주요내용 : 사북사건은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진심어린 사과를 전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다 등의 내용

문 의 처
02)6788-5307